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국내외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4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무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대검찰청에 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착취형 범죄 관련 피의자 등의 심리 감정·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인천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7.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402명”을 “40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속 공무원으로”를 “소속 공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0명(7급 3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 중 1명(7급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식재산처장”을 “각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공판부”를 “공판부, 범죄수익환수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5제3항 중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금융조사제2부 및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9제1항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사이버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사이버범죄수사부·공판부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일반 형사사건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별표 1 중 총계 “536”을 “541”로 하고, 일반직 계 “536”을 “541”로 하며, 공업연구소·보건연구소·환경연구소·심리연구소 또는 학예연구소 “34”를 “3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829”를 “7,8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829”를 “7,856”으로 하며, 검찰사무관 “402”를 “403”으로, 검찰주사 “1,434”를 “1,440”으로, 검찰주사보 “1,696”을 “1,707”로 하고, 방호주사보 2 다음에 “출입국관리주사보 1”을 신설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1 다음에 “세무주사보 1”을 신설하고, 세무주사보 1 다음에 “관세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2 중 검찰서기 “1,167”을 “1,17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24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17”을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17 다음에 “경정 1”을 신설하고, 경정 1 다음에 “경감 4”를 신설하며, 경감 4 다음에 “경위 4”를 신설하고, 경위 4 다음에 “경사 8”을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0명	2027년 9월 30일까지
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보 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33명 (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4명, 경정 1명, 경감 4 명, 경위 4명, 경사 8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범죄수익환수부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범죄 수익환수부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락)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 서기관·검찰사무관 또는 마약 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 찰사무관 <u>402명</u> 중 79명은 「검 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 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 의 정원으로 본다.	⑥----- ----- ----- ----- <u>403명</u> ----- ----- ----- -----.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 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 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수사 자 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과학기술 서기관·서기관 또는 행정사 무관 5명)은 지식재산처 <u>소속</u> <u>공무원으로</u>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u>지식재산처장</u>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 ----- ----- ----- ----- ----- <u>소속</u> <u>공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u> <u>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0명(7급</u> <u>3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u> <u>명, 경사 8명) 중 1명(7급 1명)</u> <u>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1</u> <u>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u> <u>무원으로, 1명(7급 1명)은 관세</u> <u>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u>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u>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 --- 각 해당 기관의 장---</u>.
⑧ (생략)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② (생략) ③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u>공판부</u>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공판부, 범죄수익환수부</u>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반부패수사부, <u>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u>를 둔다.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 ----- ----- ----- <u>강력범죄수사부, 공판부 및 범죄수익환수부</u> ----- -----.
② (생략) ③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 ⑩ (생략)

<신설>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② (생략)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

제13항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 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가상
자산범죄합동수사부, 범죄수익
환수부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부, 금융조사제1부, 금융조사제2부 및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둔다.

② (생략)

③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조의4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사이버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를 두

----- 금융조사제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3항-----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제13조 제1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사이버범죄수사부·공판부 및 보이

고,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조세범죄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환경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법검찰청, 전주지방법검찰청 및 제주지방법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법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② ~ ⑧ (생략)

<신설>

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⑨ ~ ⑪ (생략)	<u>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중 요 범죄</u> <u>2. 일반 형사사건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u> <u>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 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 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u>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 된 사항</u> <u>⑩ ~ ⑫ (현행 제9항부터 제11 항까지와 같음)</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36</u>	<u>541</u>	+5
일반직 계	<u>536</u>	<u>541</u>	+5
·	·	·	
·	·	·	
공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심리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u>34</u>	<u>39</u>	+5
·	·	·	
·	·	·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29</u>	<u>7,873</u>	+44
일반직 계	<u>7,829</u>	<u>7,856</u>	+27
•	•	•	
•	•	•	
검찰사무관	<u>402</u>	<u>403</u>	+1
•	•	•	
•	•	•	
검찰주사	<u>1,434</u>	<u>1,440</u>	+6
•	•	•	
•	•	•	
검찰주사보	<u>1,696</u>	<u>1,707</u>	+11
•	•	•	
•	•	•	
<u>출입국관리주사보</u>	<u><신 설></u>	<u>1</u>	+1
<u>세무주사보</u>	<u><신 설></u>	<u>1</u>	+1
<u>관세주사보</u>	<u><신 설></u>	<u>1</u>	+1
검찰서기	<u>1,167</u>	<u>1,173</u>	+6
•	•	•	

경찰공무원 계	<신 설>	17	+17
경정	<신 설>	1	+1
경감	<신 설>	4	+4
경위	<신 설>	4	+4
경사	<신 설>	8	+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3